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 및 현지 적용사례 안내

aT파리지사
박 주 연

2024년 6월 28일 한국시간 9시 30분 ~



목 차

- 01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의 배경
- 02 개정 규정 주요 내용
- 03 유럽 현지 포장재 적용 사례
- 04 시사점
- 05 aT현지화지원사업 안내
- 06 질의응답

1.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의 배경

■ EU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 2019년~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 2050년까지 세계 최초 온실가스 “넷제로(Net zero)” 달성 목표
- 기후, 에너지, 운송, 조세 정책 등 전방위적 노력
 - 생태계 보호
 - 지속가능한 푸드체인 구축
 -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 혁신을 위한 산업체 및 연구 지원
 - 정책 적용을 위한 지역투자
- 참고 : EU집행위원회 그린딜 소개 페이지

1.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의 배경

■ 플라스틱 대책 (Plastics Strategy) : 2018년 ~

- 순환경제 시행계획과 상호보완적
- 해양쓰레기, 화석연료 의존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플라스틱 제품의 디자인, 생산, 사용, 재사용 규제
 - 1회용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규제
 - 유기물 유래 / 생분해 /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정책
 -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 참고 : EU집행위원회 플라스틱 대책 소개 페이지

1.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의 배경

■ 순환경제 시행계획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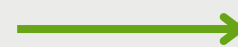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제품”이 EU 내에서 표준이 되는 것을 목표
-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산업군에 초점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 선도
- 35개의 시행계획 중 포장재, 플라스틱, 식품에 대한 내용 포함
 - 포장재 : 기존 규정 정비,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 상수도 품질관리
 - 플라스틱 :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시스템 구축, 친환경 대체재 개발
 - 식품 : “Farm to Fork”, 식품 유통 및 판매용 1회용 포장재 규제
- 참고 : EU집행위원회 순환경제 시행계획

1. EU 친환경 포장재 규정의 배경

■ “농장에서 포크까지” 계획 (Farm to Fork Strategy)

- 푸드시스템의 태생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막대한 자연자원 이용
- 전세계 온실가스의 1/3
- 생태계 다양성 교란
- 영양부족/과잉 문제
- 1차 생산자에 불리한 구조



- 지속가능한 시스템 지향
-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
- 생태계 다양성 복원
- 식품안전, 건강 및 영양 보장
- 공정무역 환경 조성

- 참고 : EU집행위원회 Farm to Fork 소개 페이지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 현황

- 1994년, 현 포장재 지침 (Directive 94/62/EC) 발효
 - 2015년 경량비닐봉지 사용 축소
 - 2018년 포장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강화
- 2020~2021년 해당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2022년 11월 **EU집행위원회 개정 규정 제안 및 공시**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 2023년 4월 의견수렴 종료
 - 2023년 11~12월 EU의회 및 이사회 검토
- 2024년 4월 EU의회 승인
- EU이사회 최종 승인 및 관보 게재 예정
 - 규정 발효 후 각종 “시행령” 수립 예정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개정 배경

- 지속적인 포장폐기물 증가
- 국가별 시행령 상이



- 포장폐기물 감축 대책 마련
- 국가별 적용 기준 통일

목표

-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 포장재 감축 (예: 과대포장 금지 등)
- 재생 플라스틱 등 대체재 사용 권장
- 참고 : EU집행위원회 개정안 제안 보도자료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포장용 소재 기준 제5조

-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기준치 100mg/kg 미만
- 기존의 관련 규정도 교차 적용
 - 화학제품 관련 규정 (Regulation 1907/2006) Annex XVII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 관련 규정 (Regulation 1935/2004).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제6조

- 2030년 1월 1일까지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 2035년 1월 1일까지 등급별 재활용 시스템 구축
 - 포장재 카테고리 번호 및 재활용 효율 등급에 따라 분류 (Annex II, Table 1 & 2)
 - 2030년 1월 1일부터 G등급은 “재활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
 - 포장재 카테고리 번호 및 재활용 효율 등급은 후속 규정으로 업데이트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제7조

플라스틱 포장 유형	2030.1.1.까지	2040.1.1.까지
1회용 음료수병	30%	65%
식품 접촉 포장재 (PET)	30%	50%
식품 접촉 포장재 (PET 이외)	10%	5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65%

-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에는 미적용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제46조

- 전체 포장폐기물 재활용율 목표치 : 2025년 65% >>>> 2030년 70%

포장 소재	2025.12.31.까지	2030.12.31.까지
플라스틱	50%	55%
알루미늄	50%	60%
유리	70%	75%
종이	75%	85%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제44조, Annex X

- 2029년 1월 1일까지 반환보상시스템(Deposit and Return System) 구축
 - 3리터 이하 플라스틱 병, 음료캔부터 적용
 - 1회용 유리병, 종이팩,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는 권고사항
 - 와인, 가향와인류, 증류주, 우유, 유제품은 예외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10, 23, 24, 25조, Annex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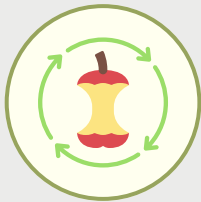
- 재사용 가능 (Reusable) 포장재 개발 및 사용 촉진
- 재사용 및 리필 포장재 제품 비율 목표치

판매제품 포장재	2030.1.1.까지	2040.1.1.까지
맥주 및 알코올 음료	10%	25%
생수 및 소다류	10%	25%

- 예외 : 영세업체, 연간 1톤 이하의 포장폐기물 생성, 창고 포함 100m² 이하의 매장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퇴비화 가능 포장재

제8조

- 개정안 발효 2년 후, 퇴비화 처리 가능 포장재 사용 의무
 - 차 및 커피를 우려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일체 (티백, 필터, 캡슐 등)
 - 신선 과일 및 채소 부착용 스티커
 - 15 μ m 미만 두께의 비닐봉지
- 적용 리스트는 추가 업데이트 가능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과대포장 금지

제9, 21, 38조

- 모든 포장재는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 하여 디자인
- 부피를 커보이게 하는 포장재 금지
- 최종 날개 제품, 묶음포장, 배송용 포장에도 모두 적용
- 충전재 공간도 “빈공간”으로 취급
- 국가당 포장폐기물 감축 목표량 책정

■ 2018년 기준, 2030년까지 5% >>> 2035년까지 10% >>> 2040년까지 15%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일부 포장재 금지

제22, 29조, Annex V

- 광고성 묶음포장을 위한 플라스틱 포장
- 1.5Kg 이하의 신선 과일 및 채소 포장
- Horeca용 1회 사용분 포장
- Horeca용 식기류
- 50μm 미만의 비닐봉지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통일된 포장재 라벨링

제11조



- 재활용 관련 비인가 로고 사용 금지
 - 개정안 발효 42개월 후부터
 - 판매용 및 묶음용 포장재의 소재 라벨 표기 의무
 - 반환보상시스템(DRS) 라벨 일원화
 - 개정안 발효 48개월 후부터
 - 모든 재사용 가능 포장재에 일원화된 라벨 및 추가 정보 QR코드 표기 의무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2. EU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

주요 내용



확장된 생산자 책임제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39, 40조

- 2024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의 시스템 구축
- “생산자(Producer)” = 해당 포장재를 EU 시장에 최초로 들여오는 자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자”에 해당
- 수입식품 수입업체는 소재국 담당기관에 등록 의무

- 참고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3. 유럽 현지 포장재 적용 사례

티백

- 2022년부터 플라스틱 사용 금지



병일체형 뚜껑

- 2024년 7월부터 의무화



3. 유럽 현지 포장재 적용 사례

재활용 라벨 표기

- 국가별로 상이
: 프랑스 트리만(Triman), 독일 판트(Pfand) 등



포장 간소화

- 과대포장 지양



3. 유럽 현지 포장재 적용 사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 친환경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재활용 소재 사용

- 대기업 위주 발빠른 대응



4. 시사점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수입업체 규모에 따라 같은 제품에 다른 조건 적용 받을수도
- 현지유통업체 진출 시 예외 없는 규정 준수 요구 예상

■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 현지 동향 및 관련 규정 업데이트 사항 모니터링
- 수출업체 :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적용
- 수입업체 : 소재국 담당기관에 등록 및 포장폐기물량 신고

5. aT현지화지원사업 - 유럽

지 원 대 상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입(예정) 업체

신 청 기 간

매년 사업게시 (2월) ~ 11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신 청 방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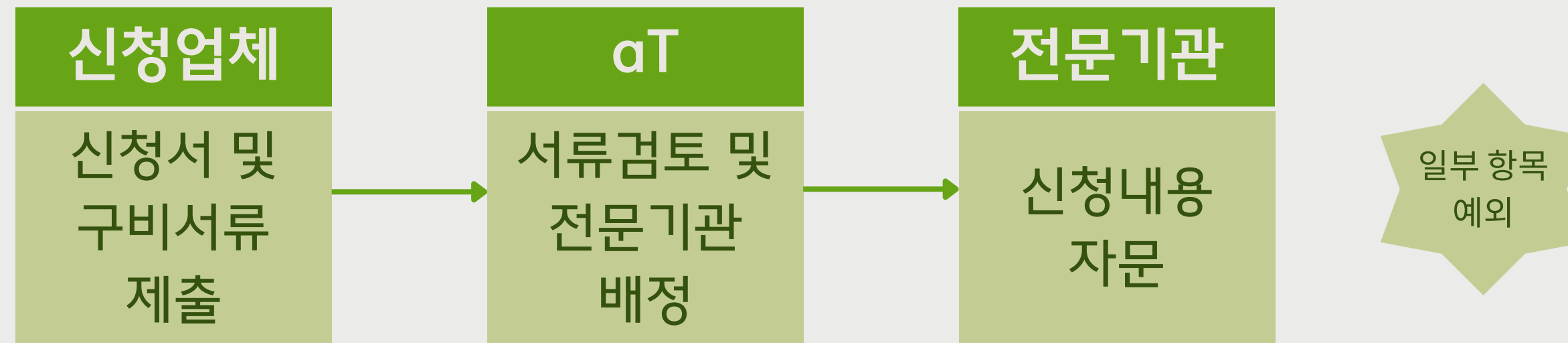
한국 수출업체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유럽 수입업체 : 이메일 신청 (local.atparis@gmail.com)

지 원 한 도

한국 수출업체 : (농식품) 5천만원 | (수산) 5천만원
유럽 수입업체 : (농식품) 2천만원 | (수산) 3천만원

 **20% 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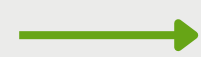
진 행 절 차



5. aT현지화지원사업 - 유럽

지적재산권

1차 사전조사



2차 출원대행

상표권 및 특허권

수출업체
한정

전문기관 자문

법률일반

계약서, 법인설립 등

통 관

통관사전검토, 통관 안내 등

식품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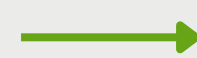
관련 규정 및 기준 등

관 세

관세율, HS코드 분류 등

라 벨 링

1차 통관사전검토



2차 라벨링

수입등록/검사

수입등록

필수 등록(갱신), 검사

식품검사

통관검역 검사

사후비용
환급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

K-FOOD 로고 사용 필수

수입업체
한정

사후비용
환급

6. 질의응답

**실시간 응답이 어려운 질의는
aT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한국 수출업체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유럽 수입업체 : 이메일 신청 (local.atparis@gmail.com)



감사합니다.

aT파리지사 박 주 연



+33 1 4108 6096



juyaun.park@at.or.kr



농림축산식품부



CenterParis

Korea Agro-Trade Center, Paris